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30
----------	-------

발의연월일 : 2026. 6. 12.

발 의 자 : 윤영석 · 박덕흠 · 박성훈
김태호 · 구자근 · 유용원
박성민 · 곽규택 · 조정태
최형두 · 정동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반드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정의 규정과 실제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또한 현행 정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정의를 각각 해당 자격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규정한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과 연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각 자격자

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을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을 “제1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의3. (생략)</p> <p>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란 <u>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제10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u>을 말한다.</p> <p>3. “국가유산수리기능자”란 <u>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u>을 말한다.</p> <p>4. ~ 17.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1의3. (현행과 같음)</p> <p>2. ----- <u>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u> ----- ----- ----- ----- -----.</p> <p>3. ----- <u>제11조제2항에 따른</u> ----- ----- ----- ----- -----.</p> <p>4. ~ 17. (현행과 같음)</p>